



NORTH KOREA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을 밝힙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김수암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김국신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이규창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CONTENTS

제6권 2호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인 쇄 2012년 1월

발 행 2012년 1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인권연구센터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88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 (수유동)

전 화 (대표) 02-900-4300

(직통) 02-901-2528

(팩스) 02-901-2572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디자인·인쇄 도서출판 오름

전화 02-585-9122, 9123

<비매품>



| 국제사회 동향

- 1. 개별국가 3
- 2. 유엔과 국제협력 6
- 3. NGO 8
- 4. 분석 및 평가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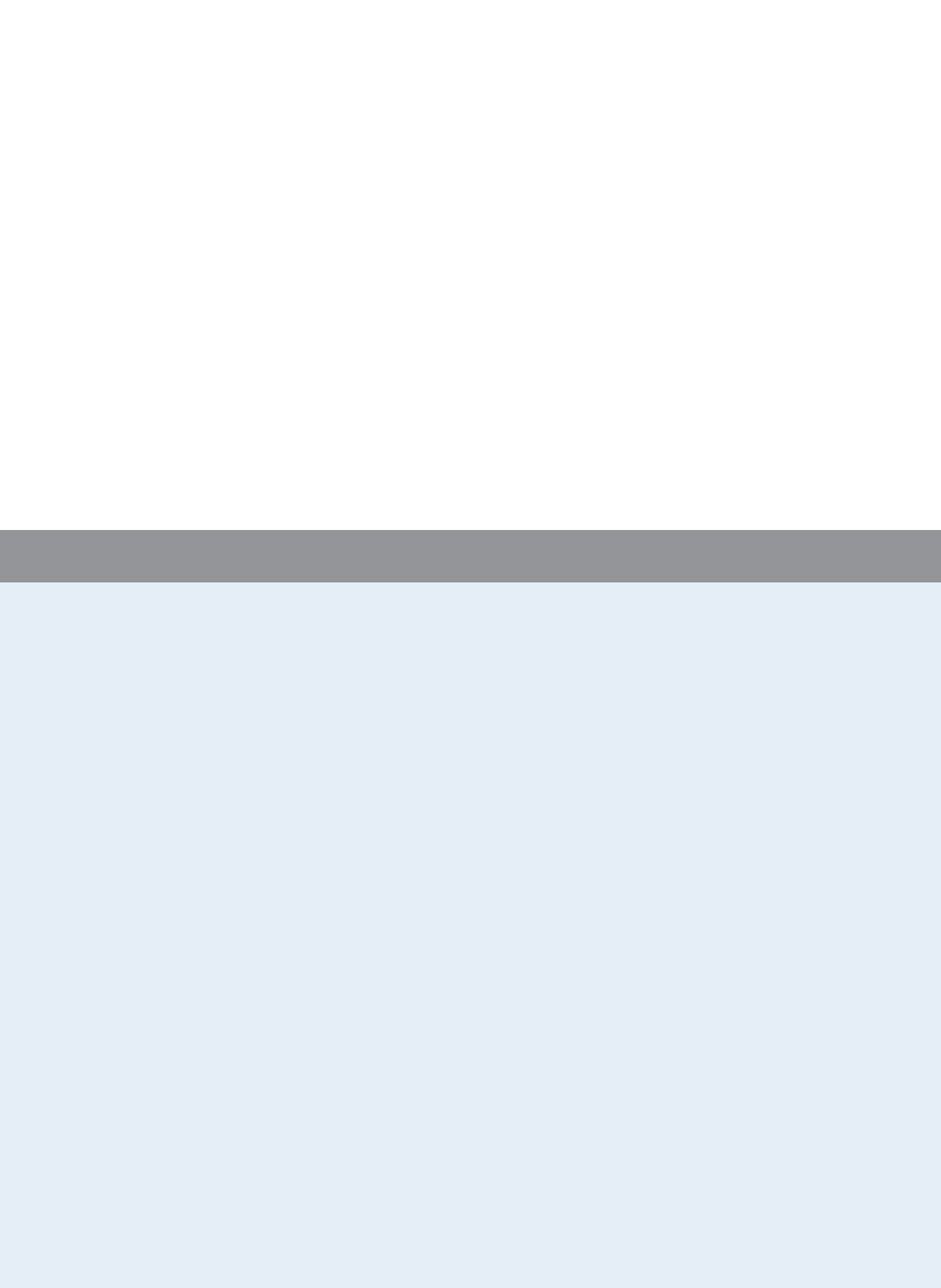
| 북한의 대응

- 1. 미국에 대한 반응 17
- 2. 일본에 대한 반응 19
-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21
- 4. 남한에 대한 반응 22
- 5. 분석 및 평가 24



| 인도주의 사안

- 1. 탈북자 29
- 2. 납북자 37
- 3. 국군포로 40
- 4. 이산가족 40
- 5. 분석 및 평가 43





1. 개별국가	3
2. 유엔과 국제협력	6
3. NGO	8
4. 분석 및 평가	11

1. 개별국가

가. 미국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9.13)

- 미 국무부는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7~12월)’에서 “북한의 헌법과 법률, 정책 등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심각하게 개인의 종교활동을 제약한다”고 지적
 - 미 국무부는 9월 13일 「2010년 하반기 국제종교자유보고서」(July–December, 2010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를 발표
 - 미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 북한, 미얀마(버마), 에리트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특별우려국가(Countries of Particular Concern: CPC)로 지정
 - 국제종교 및 인권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당국은 허락하지 않은 종교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을 처벌하고 있다고 언급

미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 소위원회, 북한인권 청문회 개최(9.20)

-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아프리카, 국제보건, 인권소위원회’는 ‘북한 인권: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청문회 개최
 -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탈북자 김영순의 증언 청취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방한(9.18~21)

- 킹 특사는 성명서를 통해 방한 목적에 대해 “청와대, 외교부, 통일부 관계자들과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표명
 - 또한 “미국은 북한 내 인권 상황과 북한 주민의 안녕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인권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이며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향후 북미관계 개선 전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

나. 유럽연합

유럽 의회,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7.13)

- 유럽 의회는 벨기에에서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 현지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해 증언

영국 의회, 북한인권 조사 촉구 동의안 제출(7.13)

- 영국 의회는 북한 정부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동의안 제출
 - 유엔이 북한 정부의 인권유린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라는 명칭의 '얼리데이모션(Early Day Motion, EDMs) 2079' 제출
 - * EDMs는 어떤 이슈나 사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하원의원이 자신의 활동을 고시하고 동료의 동의를 구하는 영국 의회의 공식 절차를 의미

영국 의회의원,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서한 여야에 전달(7.20)

- 영국의 상·하원 의원 20명은 한국의 여야 4당 대표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 전달
 - 동 서한에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인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견해 표명

영국정부, 북한대표단과 인권·핵문제 논의(12.3~5)

- 영국정부는 영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대표단과 인권과 핵문제에 대해 논의

캐나다 의회, '통영의 딸' 결의안 채택(12.8)

- 캐나다 의회는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씨와 두 딸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토론회 개최(7.13)

- 국가인권위원회는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과 유럽의회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집약된 여론은 북한 정권에는 큰 압력이 되고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들에게는 유력한 공식 호소 창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

국회, 북한인권법 논쟁(7.18)

-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과 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북한인권법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 개최
 -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운영위원장은 “진보·보수 논쟁 구도에서 벗어나 두 법안이 북한 인권문제에 접근하는 다른 시각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2030’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동영상 제작(8.18)

- 통일연구원은 공개재판,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인권 현실을 담은 ‘노 티어즈(No Tears)’라는 제목의 DVD(20분 분량)를 제작
 - 연구원이 입수한 판결문에는 북한 최고재판소가 2010년 9월 소 6마리 등 34만 1천900원 상당을 훔친 혐의(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로 기소된 리성철(당시 40세) 씨에게 공개처형을 선고한 내용 수록
 - 최고재판소는 판결문에서 “평양시재판소가 사형 판결해 확정된 피소자(피고인) 리성철에 대한 공개사형 집행을 승인해 달라”고 노동당중앙위원회 행정부 법무과에 요청

외교통상부,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10.19)

- 외교통상부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 제기
 - 탈북자 문제에 관여하는 국가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촉구
 -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 우려 표명

- 납북자·국군포로를 포함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 억류된 사람들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개선' 국가정책 수립 권고(10.24)

- 국가인권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안'을 채택, 정부에 제시
 - 권고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 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3대 인권 현안 등 3개 전략 과제로 구성

통일연구원, '북한인권교류회' 개최(11.16)

- 통일연구원은 탈북자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단체들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북한인권교류회 개최
 - 세계북한연구센터, 자유조선방송, 평양민속예술단, NK지식인연대 등 12개 국내 탈북자 단체 대표와 북한인권 관련 주요 국내인사들이 참석

2. 유엔과 국제협력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 총회에 보고서 제출(8.24)

- 마르주끼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정기보고서 제출
 - 제3국 현지인과 결혼한 탈북 여성과 자녀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
 - 정치범수용소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범수용소를 감시하기 위한 독립적인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탈북자 인신매매 실태 발언(10.20)

- 마르주끼 다르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태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대부분은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발언
 - 다르스만 보고관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태국에 들어온 탈북자 가운데 870명 가량이 망명을 신청했으며 대부분 인신매매 피해자들이라고 언급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한(11.20~25)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관계자 및 북한 인권과 관련된 개인·민간단체 면담
 - ‘통영의 딸’ 신숙자씨의 남편 오길남씨 등과 비공개 면담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신숙자씨 납북사건은 납북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중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강조
 - 유엔내 ‘강제 혹은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을 활용하여 해결하도록 제안 (11.25)

유엔 총회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11.21)

-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52개국이 공동 제안
 -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표로 통과
 - 2010년 찬성 103, 반대 18, 기권 60표, 2009년 찬성 97, 반대 19, 기권 65표와 비교할 때 찬성국이 증가하는 추세
 -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 및 대우, 정당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에 따른 처형의 문제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비판
 -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서 많은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비판
 - 제3국에서 송환되거나 추방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에 심각한 우려 표명
 - 매춘이나 인신매매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철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 추가
 - 긴급한 인도적 우려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것이 유감이라며 상봉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촉구
-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 최종 가결(12.19)
 - 찬성 123, 반대 16, 기권 51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유엔이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정치적 모략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
 -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벌어진 이번 결의 채택놀음은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해마다 일삼고 있는 판에 박힌 정치적 모략책동”이라고 비난(11.24)

3. NGO

북한인권정의연대, 북한인권 관련 뮤지컬 ‘언틸 더 데이’ 공연(7.18~28)

- 북한인권정의연대는 문화일보 홀에서 북한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뮤지컬 ‘언틸 더 데이’ 공연
 - ‘언틸 더 데이’는 인민이 굶어 죽는 비참한 상태를 방치하는 북한 지도층에 염증을 느낀 노동당의 신진 관료 주명식과 북한 유명 배우로 활동하는 강순천의 탈북 과정을 담은 뮤지컬

북한인권정보센터, 구금시설 보고서 발간(7.20)

-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의 집결소·교양소·노동단련대·구류장·교화소·정치범수용소와 같은 구금시설 운영체제와 인권실태를 담은 보고서 2권 발간
 - 『북한 구금시설 운영체제와 인권실태』
 -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운영체제와 인권실태』

자유북한운동연합, 김포에서 대북전단 20만장 살포(8.31)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과 실향민 등 30여 명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문수산 주변에서 북한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전단을 북으로 살포
 - 대형 풍선 10개에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동영상에 담긴 DVD 400개와 소책자 100권, 미화 1달러짜리 지폐 1천장도 동봉

국제인권단체들, 반인도범죄 관련 국제대회 개최(9.7)

- 열린북한방송, 국제사면위원회(AI), 휴먼라이츠워치(HRW), 프리덤하우스, 국제인권연맹(FIDH)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도쿄 메이지대에서 ‘김정일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행위 증단을 촉구하는 국제대회’ 개최
 - 동 행사를 계기로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발족
 - 각국 정부가 공동으로 유엔 산하에 북한의 반인도 범죄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만들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현장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

자유북한운동연합, '독침 테러기도' 후 첫 대북전단 살포(9.29)

-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박상학 대표에 대한 북한측의 독침 테러기도에 반발해 대북전단 20만장이 담긴 대형 풍선을 북으로 살포
 - 대형풍선 10개에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 20만장과 미화 1달러 짜리 지폐 500장 동봉

세계기독교연대(CSW), 정치범수용소 해체 촉구 시위(10.6)

- 세계기독교연대(CSW) 소속 회원과 영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등 10여 명은 주영 북한대사관 앞에서 정치범수용소 해체를 촉구하는 시위 전개

탈북자단체, 북한노동당 창당일 임진각에서 전단 살포(10.10)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 20여 명과 수전 솔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 탈북자단체 관계자들은 북한 노동당 창건 66주년이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1주기인 10월 10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20만장, 미화 1달러 지폐 1천장, 라디오 100개 등을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쪽으로 살포
 - 전단에는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의 생전 활동, 국립묘지 안장 소식 등과 북한의 3대 세습을 비난하는 내용 포함

통영의 딸 구출 캠페인 전개

- 북한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 반인도범죄 철폐 국제연대(ICNK)'는 서울역광장에서 신숙자 모녀 구출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반인도 범죄 심판을 촉구하는 캠페인 전개(10.6)
-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북한인권관련 단체들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억류된 신숙자씨와 두 딸의 생사확인 과 송환을 위한 '구출! 통영의 딸 백만엽서 청원운동' 전개(10.13)
-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운동'(대표 방수열 목사)은 경남 통영시 중앙동 문화마당에서 신숙자씨 모녀의 조기 송환을 촉구하는 시민대회 개최(10.23)

국제인권연맹, 연례보고서 발표(10.25)

- 국제인권연맹(FIDH)은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한 인권탄압 국가들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부는 민주화 혁명을 의식해 정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

북한인권국제영화제 개최(11.10~11)

- 동국대 이해랑예술극장에서 북한의 인권을 조명하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북한인권국제영화제 2011 서울’ 개최
 - 이시마루 지루 감독의 ‘노스 코리아 VJ’(North Korea VJ)와 이희현 감독의 ‘외로운 메아리’가 기획작으로 선정
 - 이상현 감독의 ‘인사이드’, 권순도 감독의 ‘선처’, 조연수 감독의 ‘따뜻한 이웃’, 정성산·김성훈 감독의 ‘량강도 아이들’, 김규민 감독의 ‘겨울나비’, 장률 감독의 ‘두만강’, 김태균 감독의 ‘크로싱’, N.C 헤이킨 감독의 ‘김정일리아’ 등 상영

북한인권단체, EU본부서 북한 종교탄압 규탄(11.8)

- 북한인권단체인 피랍탈북인권연대가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본부 앞에서 북한의 종교탄압을 규탄하는 퍼포먼스 전개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난민 국제회의 개최(11.23)

- 북한인권시민연합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브라질 인권단체 코넥타스 디레이토스 휴마노스와 공동으로 ‘제11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개최
 - 각국 인권 담당 외교관과 시민단체 회원, 취재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와 북한의 한국인 납치 문제 등을 재조명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 북한 인권개선 촉구 집회 개최(12.9)

- 유럽지역에 정착한 탈북자 단체인 재유럽조선인총연합회는 주영북한대사관 앞에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

미국 북한인권단체, 국회에 북한인권법 촉구 서한 발송(12.9)

-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 등 149명의 외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 “세계인권선언 63주년 전날인 오늘, 북한 주민이 지속적으로 당하는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민국 국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표명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 ‘북한인권 개입’ 쫓기대회 개최(12.9)

-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국제연대) 한국위원회는 서울을 비롯한 미국·일본·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케냐·잠비아·나이지리아·시에라리온 등 11개국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개입을 촉구하는 쫓기대회가 동시에 개최되었다고 발표

탈북단체, 조문반대 대북전단 살포(12.21)

- 32개 탈북·북한인권단체로 구성된 ‘독재자 김정일 조문반대 탈북단체 비상대책회의’ 회원들은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대형 비닐 풍선 5개에 매달아 북쪽으로 살포
 - 전단에는 리비아 시민 혁명과 카다피 사망과 북한 3대 세습을 비난하는 내용 포함

4. 분석 및 평가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 전략 지속

- 미 국무부는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7~12월)’에서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재지정
- 미국 의회 북한인권 관련 청문회 개최
- 제6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 점차적으로 찬성국가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은 강화되는 것으로 판단

북한인권에 대한 한·미 공조 지속

-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와 정부 부처 인사들과의 면담 과정에서 북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 형성

반인도범죄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 접근 강화

- 영국 의회는 북한 정부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동 의안 제출
- 국제인권단체들은 공동으로 도쿄 메이지대에서 '김정일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행위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대회 개최 및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결성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증대

- 영국의 상·하원 의원 20명은 우리 여야 4당 대표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 전달
-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 등 149명의 외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국회에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한 발송

'통영의 딸' 문제의 부상과 국제사회의 관심 고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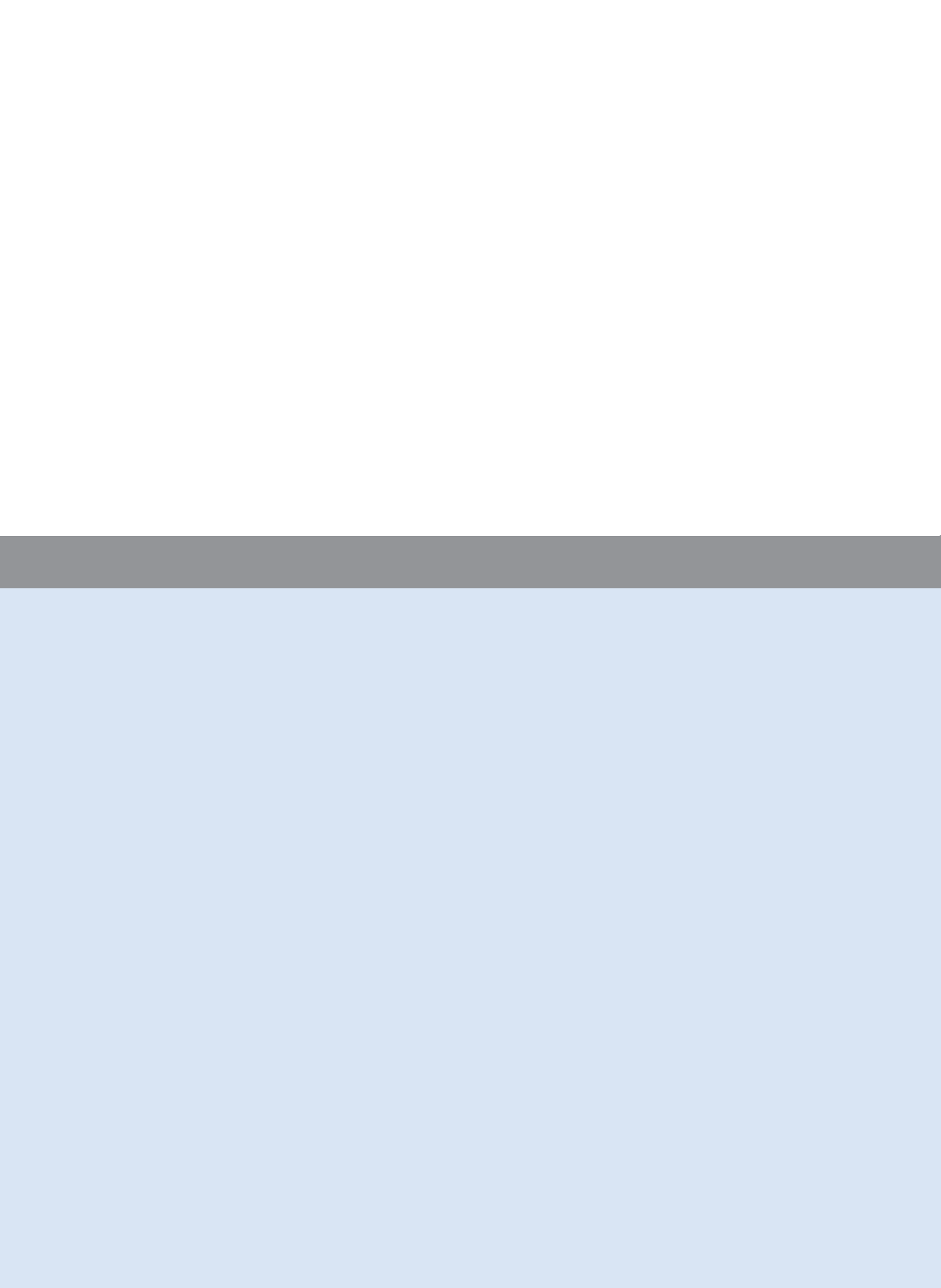
- 신숙자씨와 두 딸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위한 '구출! 통영의 딸 백만엽서 청원운동' 전개
- 다루스만 보고관은 방한 시 '통영의 딸' 신숙자씨의 남편 오길남씨 등과 비공개 면담
- 캐나다 의회는 북한에 억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숙자씨와 두 딸의 생사확인 및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뮤지컬, 영화 등을 통한 북한인권 관심 확산

- 북한의 인권을 조명하는 극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북한인권국제영화제 2011 서울’ 개최
- 북한인권 실상을 고발하는 뮤지컬 ‘언틸 더 데이’ 공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NGO간 연대 강화

- ‘북한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국제연대(국제연대)가 결성되어 11개국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 동시 전개
- ‘북한 반인도 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ICNK)’ 발족





1. 미국에 대한 반응	17
2. 일본에 대한 반응	19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21
4. 남한에 대한 반응	22
5. 분석 및 평가	24

1. 미국에 대한 반응

외무성 대변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 긍정적 검토”(8.11)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월 11일 미국이 제기한 ‘재미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긍정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외무성 대변인은 미-북 양국이 인도주의문제에서 협력을 도모해 나간다면 향후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상호신뢰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표명

조선중앙통신 외, 주한미군 고엽제 매몰사건 비난(8.12)

-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조선중앙방송은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몰사건이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미군 측의 행태와 남한 당국의 비굴한 자세 때문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남한 정부와 미군 측을 동시에 비난

외무성 대변인, “미군유해발굴회담 긍정 검토”(8.19)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이 제안한 미군유해발굴을 위한 회담을 진행할 것과 관련 “우리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미국이 제기한 미군유해발굴회담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었다. 현재 조미 쌍방 군부들 사이에 회담과 관련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 미 국무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의 개리 파커 공보관은 2011년 8월 2일 유해 발굴 사업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서한을 북한 당국에 보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 “종교문제 언급은 내정간섭”

- 미 국무부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다른 국가의 종교문제를 거론하고 ‘특별우려 국가’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종교문제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9.27, 로동신문)
- 중국의 입장을 원용하여 종교문제 거론이 내정간섭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
 - 미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9월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보고서는 중국의 종교인권상황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한 것으

로 중국은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하였다고 보도(9.2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외, 주한미군 10대 여학생 성폭행 비난 및 한미행정협정(SOFA)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주장

-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성폭행범을 미군헌병대에 이관한 것과 관련 “남한 정부의 굴욕적 처사에 의해 미군범죄가 날이 갈수록 황포해지고 남한 주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고 비난(10.2, 조선중앙방송)
 - * 미 2사단 소속의 K 이병은 9월 24일 만취상태로 동두천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A양(18세)을 흥기로 위협한 뒤 수차례 성폭행
 - * 그러나 K 이병은 미국에 의해 재판받지 않고 우리 법원에서 재판
 - * 제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11월 1일 징역 10년의 중형 선고
-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을 비난하며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폐기 주장’(10.6,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 대변인은 담화를 발표해 한미행정협정을 비롯한 굴욕적인 조약과 협정들을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등의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선동(10.1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통신,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반발(10.25)

- 미국 외교당국자의 북한인권문제 제기는 “우리에 대한 엄중한 국권침해, 인권침해”라며 “인권외교는 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고 주장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0월 6일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열린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이 우려하는 북한인권문제에는 납북자 문제도 포함되며, 북한은 납북자들을 즉시 송환해야 한다고 발언

조선중앙통신 외, 반 월가 시위 보도 및 자본주의 사회 비판(11.7)

- 반 월가 시위투쟁은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급적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되어 폭발한 대중적인 항의투쟁”이라면서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는 사회, 사람중심의 사회주의 사회가 인류의 나아갈 길”이라고 북한 체제를 선전(11.7,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 국가들이 근로대중의 항의행동에 폭력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서구 자본주의 국가들을 비난(11.14, 조선중앙통신)
-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서 금융 및 채무위기로 근로대중의 시위투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11.17,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반 월가 시위 관련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주의 만연, 빈부격차, 황금만능주의” 등을 지적하며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비판(11. 30,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 대규모 반 월가 시위는 “자본주의야말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결여된 반 인민적 사회라는 것을 입증해준다”며 반미투쟁 선동(12.5,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2. 일본에 대한 반응

조선중앙통신 외, 과거청산 촉구

- 일본 정부의 「전후강제억류자특별조치법」(일명 시베리아특별조치법) 채택 결정과 관련, “일본인 포로생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중요하고 과거 일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절박하지 않단 말인가”라고 비난하며 선 과거청산 촉구(7.6, 조선중앙통신·민주조선)
 - * 시베리아특별조치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시베리아 등에 억류돼 강제노동을 한 일본인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법으로 2010년 6월 21일부터 시행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의 강제노동과 관련, 러시아 사할린 거주 동포들의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에 대해 “과거청산은 법적·도덕적 의무이고 책임”이라며 과거청산 이행을 재차 촉구(7.22, 조선중앙통신·민주조선, 8.31, 조선중앙통신)
- 일본의 간토(關東)대지진(1923.9.1) 참변은 일본정부의 계획 하에 조작된 집단학살사건이라고 비난하면서 ‘과거사 왜곡 중단과 청산’ 촉구
- 과거범죄, 위안부문제, 간토대지진 등 일본은 하루빨리 과거청산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9.11 로동신문)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731부대의 세균전만행 자료 공개와 관련 “과거죄악에 대해 전면부정의 길로 나가는 일본의 앞날이 재침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며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 주장(11.10, 조선중앙통신·민주조선)
 - * 생체실험으로 악명을 떨쳤던 일본군 731부대의 세균전 피해자가 2만6천명이었던 극비문서가 10월 16일 일본 시민단체에 의해 공개

조선중앙통신,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 조선중앙통신은 일본을 상대로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거듭 촉구
 - 일본군위안부문제에 1991년에 국제무대에 상정된지 20년이 경과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식 사죄와 배상 등 정치도덕적, 법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8.13)
 - 제10차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다는 소식을 보도(8.21)
 - 남한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8월 31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요구하였다고 보도(9.3)

조선중앙통신 외, 일 당국자의 ‘과거청산 책임회피 발언’ 비난(10.31)

-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평양방송은 일본 외무성 당국자의 일본군성노예범죄문제 등 과거청산이 완결되었다는 발언에 대해 이는 “우리 민족에 대한 악랄한 중상모독, 엄청난 도전”이라고 비난

조선중앙통신, 유엔 주재 일본 대사의 납치문제 언급에 반발(12.3)

- 유엔 주재 일본 대사가 유엔총회 제66차 회의 제3위원회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이며 일본이 납치문제를 언급한 것은 납치문제를 정략적 목적에 악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
 - 유엔주재 일본대사는 표결이 진행되기 전에 한 연설에서 “아직까지 북한에 의한 납치가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언
 -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1월 21일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결의안은 ‘납치자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 포함

로동신문, 일본의 남녀차별 정도 왜곡·비방(11.19)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로동신문은 이를 ‘세계경제연단’으로 번역)이 발간한 「2011년 남녀 격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에서 일본이 자본주의 국가 가운데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왜곡하며 일본의 남녀 평등 수준을 비난
 - 보고서는 135개국의 남녀 격차 순위를 발표하였는데 일본은 2007년 91위, 2008년 98위, 2009년 101위, 2010년 94위에 이어 2011년에는 98위를 차지
 - 보고서는 2011년의 경우 아이슬란드가 1위, 노르웨이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61위, 일본 98위, 한국 107위를 차지한 것으로 발표(보고서 8~9쪽)
 - 보고서는 경제 참여 기회, 교육 정도, 보건 및 수명, 정치 분야에서의 권한 등 4가지 범주에 따라 국가별 남녀 격차 지수를 산출하였는데 북한은 순위에 포함되지 않음.

3.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반응

조선중앙방송 외,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선전

- 조선중앙방송·로동신문·조선중앙통신은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공포 65주년과 관련된 천리마동상에 여성상이 새겨졌다고 전하며 “북한여성의 긍지 높은 삶”을 선전(7.29)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1946년 7월 30일 공포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여성해방강령, 여성존중의 숭고한 뜻이 깃들어 있는 사랑의 법전”이라고 선전(7.30, 조선중앙통신)
-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공포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전국 여맹 예술소조 종합공연이 ‘최룡해(당 비서)·‘모성실(여맹 위원장) 등의 참가하에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7.30,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장거리 의료봉사사업 선전(8.2)

- 2010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장거리 의료봉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지금까지 수천 회에 걸친 치료 성과를 거두었다고 선전

- 보건성 및 관련 단체들이 먼거리 의료봉사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의 의지를 천명

조선중앙통신, 수재물자 전달 및 구호물자 전달 소식 보도

- 국제적십자연맹(IFRC)이 함경남도 함흥시, 황해북도 금천군, 황해남도 해주시와 청단군 등 피해가 심한 수재민들에게 가정용품과 방수 비닐막 등을 전달하였다고 보도(8.4)
 - 통신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인용, 국제적십자연맹이 북한의 '큰물' 피해복구 특별지원예산으로 59만 달러를 집행하였다고 보도
- 북한적십자회가 황해남도, 강원도, 개성시 등 홍수피해지역에 조사단을 파견, 구호물자 전달, 의료봉사 등의 지원사업을 전개한 내용 보도(8.4)
- 미 국무부가 2011년 8월 18일 민간단체(NGO)를 통해 90만 달러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 보도(8.19)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 강화될 것”(10.24)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유엔 총회 강화 등 국제문제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때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

4. 남한에 대한 반응

조선중앙통신, 남한 내에서의 인권문제 보도

-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등 남한 내에서 있었던 노사문제, 노동운동 등을 보도
 - 민주노총 위원장이 7월 13일 당국의 부당한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책동을 규탄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고 보도(7.16)
 -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한진중공업 대량해고를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무참히 진압한 경찰의 죄행을 단죄하였다고 보도(7.16)
- 공무원노조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위원회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등이 8월

31일 집회를 갖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에게 항의하는 직원들을 무더기로 징계처분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도(9.3)

조선중앙통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 및 시위 보도

- 남한의 50여개 정당, 노동·인권·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도(8.9)
- 남한의 50여개 노동·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양심수 면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양심수 석방을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요구하였다고 보도(8.31)
- 남한의 국가보안법 제정 63주년을 맞이하여 국가보안법은 “인민들의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를 유린하는 반 인권적 파쇼악법, 남북대결 고취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반 통일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철폐를 선동(12.1)

로동신문, 통일연구원의 2011 북한인권백서 발간 비난(7.18)

- 로동신문은 통일연구원의 2011 북한인권백서는 “허위와 기만, 날조로 엮어진 것으로서 흑백을 전도한 너절한 반공화국모략문서”이며, 북한인권백서 발간은 북한에 대한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며 반민족적인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범죄적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

조선민주법률가협회·인권연구협회, 이명박 정부 고발(7.22)

-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남한을 최악의 인권불모지로 전락시켰다며 공동 고발
 - 이명박 정부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이 부활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왜곡·비방

평양방송, 남한의 북한인권문제 언급에 반발(7.30)

- 평양방송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인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 “동족대결을 노골화하려는 기도”라고 반발

조선중앙통신·조선중앙방송, 남북 종교인모임 보도(9.22)

-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 종교인 모임이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
 - 북한 종교인협의회와 남한 종교인평화회의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모임을 가지며, 종교인들의 단합을 실현하고 통일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보도
 - 이날 모임에는 장재언 조선종교인협의회회 회장을 비롯한 북측 종교인 대표들과 김희중 대주교를 단장으로 하는 남측 7대 종단 대표들이 참가

조평통 외,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등 북한인권문제 제기 비난

-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하여 북한인권법은 반 민족적인 체제통일을 노린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7.6, 로동신문)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서기국 명의의 보도를 통해 남측의 조속한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등 북한인권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반북 인권모략책동으로 얻을 것이라곤 남북관계의 악화밖에 없다”고 비난·반발(12.9, 조평통)
- 우리 정부의 북한인권법 채택 움직임을 “남북관계 개선 차단, 체제대결을 심화시키기 위한 고의적 책동”이라고 비난(12.14, 조선중앙통신·로동신문)

5. 분석 및 평가

미국·일본·한국에 대한 인권문제 비판 지속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희석하기 위해 미국·일본·한국 내에서의 인권문제 비판을 지속
 - 미국에 대해서는 반 월가 시위를 집중 보도하고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강조
 - 일본에 대해서는 위안부문제, 강제노동에 대한 과거청산 촉구를 지속하면서 731 부대의 세균전 만행에 대한 사죄와 배상 주장
 - 한국에 대해서는 한진중공업 대량해고 등의 노사문제를 집중 보도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 주장 지속

북한인권문제 언급에 대한 반발 지속

- 미 외교당국자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에 반발하고 미 국무부의 2010년 하반기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발표에 대해서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
- 유엔 주재 일본 대사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가능성 언급에 대해 납치문제는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반박
- 한국에 대해서는 통일연구원의 2011북한인권백서 발간, 정부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북한인권문제 언급에 반발
- 북한에는 인권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 되풀이

인권문제를 통한 한·미 갈등 조장 및 주민 선동 지속

-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몰사건과 주한미군의 10대 여학생 성폭행 사건을 비난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한미행정협정(SOFA) 폐기 및 주한미군 철수 주장 되풀이

북한의 여성인권 선전

- 천리마동상에 여성상이 새겨졌으며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공포 6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다고 보도
-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남녀격차순위에서 일본이 최저 수준을 차지하였다고 왜곡함으로써 자신들의 남녀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
-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과 여성권리보장법(2010.12.22 제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녀격차 수준은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순위에도 포함되지 못할 정도로 북한여성의 인권은 열악한 수준

미군유해 발굴회담을 통한 인도주의 부각 및 미국의 지원 유도

- 미국이 제안한 미군유해 발굴을 위한 회담 진행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
- 이를 통해 북한은 인도주의 사안을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는 회담 및 유해송환을 통한 지원을 받아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수재물자 전달 소식 보도를 통한 투명성 논란 차단

- 북한이 홍수로 인해 수재물자 및 구호물자 전달 소식을 보도한 것은 이례적
- 국제적십자연맹의 수재물자 전달 소식을 적극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수재물자가 군수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시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됨.

인도주의 사안



1. 탈북자	29
2. 납북자	37
3. 국군포로	40
4. 이산가족	40
5. 분석 및 평가	43

1. 탈북자

‘미국의 소리’(VOA) 방송, 6월 탈북자 2명 난민 지위로 미국 정착(7.5)

- 미국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1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
 - 2004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는 총 122명으로 증가

통일부, 제2하나원 착공식(7.7)

- 2012년 말 준공 목표로 제2하나원 착공
 - 1년에 최대 5천 명의 탈북자에 대한 교육 및 고학력 전문직 탈북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가능
 - 제2하나원은 교육관, 생활관, 부대시설 등 6개동 건물로 이뤄지며 한 번에 교육할 수 있는 인원은 총 500명 규모

통일부, 탈북자 한국 입국 소요기간 단축 추세(7.4)

-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을 나온 뒤 국내에 입국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추세
 - 탈북 후 1년 이내에 입국한 경우는 2009년 30%, 2010년 39% 수준을 기록
 - 금년 상반기 입국한 탈북자 1,428명 중 52%가 탈북 후 1년 이내 입국

미국의소리(VOA) 방송, 난민 신분의 탈북자 영국에 가장 많이 정착(7.14)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이 발간한 국가별 난민 현황 보고서를 인용하여 2010년 말 난민 신분 탈북자 917명 중 581명이 영국에 정착하였다고 보도
 - 독일(146명), 네덜란드(32명), 호주, 미국(이상 25명씩), 캐나다(23명), 노르웨이, 러시아(이상 14명씩), 덴마크(9명), 스웨덴(8명), 아일랜드(6명), 스위스(4명), 키르기스스탄(3명), 이스라엘(2명) 등

행정안전부, 북한이탈주민 경력직 공무원 채용(7.12)

- 북한이탈주민이 한국 사회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의 특별임용 근거 규정을 마련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동포사랑TV' 개국(7.11)

- 탈북자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각종 소식과 교육정보를 전달하는 '동포사랑TV'가 6월 29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방송 시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탈북자 지원 '24시간 콜센터' 상담 증가(7.11)

-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2011년 5월 말 개소한 '24시간 콜센터'는 6월 한 달간 총 1,400건의 상담 실시
 - 전화 상담(90%), 온라인 상담(5%), 출장 법률상담(1%), 탈북자들이 직접 콜센터를 찾는 내방 상담(4%) 등의 순서

김정일 위원장, 주민 탈북과 외부사조 유입을 막기 위한 통제강화 지시(8.16)

- 김정일 위원장은 7월 1~6일 신의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현지 주민의 옷차림과 무질서 등에 대해 "평안북도가 자본주의의 날라리판이 됐다"며 주민들의 탈북과 외부사조 유입을 막기 위한 통제강화 직접 지시
 -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은 "7월 초 대규모 중앙검열단이 평북지역에 파견돼 간부들의 사상문제와 주민의 사회주의 일탈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언

위키리크스, 탈북자의 한국 인도에 비협조적인 중국 태도 공개(9.4)

-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의 2010년 2월 12일자 비밀 전문에 따르면,
 - 중국 국가안전부는 한국 정부가 2009년 9월 인천공항에 들어온 위구르 독립운동 조직 간부의 중국 송환을 거부한 이후 중국 내 탈북자의 한국 인도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전환

결핵연구원장, 탈북자 결핵 감염률 80%라고 발표(8.30)

- 김희진 결핵연구원장은 한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2만여 명의 결핵 감염률이 남한주민의 3배 수준인 약 80%에 달한다고 발표
 - 북한이탈주민의 결핵 발병률이 2003년 1.5%에서 2006년 2.2%, 2009년 2.1%, 2010년 2.5%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적극적인 예방대책 강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들의 가족을 데려오는 사례 증가(9.11)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따르면, 탈북한 사람 중에서 남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던 비율은 2009년 이전에는 34%였으나 2010년 이후에는 57%로 높아짐.

NHK방송, 일본에 도착한 탈북자 9명 한국행(9.16)

- 일본 NHK방송은 9월 13일 목선을 타고 일본 이시카와(石川)현 앞바다에 표류한 탈북자 9명은 북한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 탈출을 결심했다고 보도
 - 10월 4일 탈북자 9명 모두 한국에 입국

국가정보원, 테러기도 혐의 탈북자 출신 40대 구속(9.16)

-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한 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탈북자 출신 40대 안모씨를 붙잡아 수사 중인 것으로 전언
 -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 안씨는 검거 당시 독침 등 암살무기 소지

북한 인민군 출신 북한이탈주민, '김일성 동상을 까는(부수는) 모임' 결성(9.24)

-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작년 12월 제대군인을 주축으로 탈북자 100여 명이 '김일성 동상을 까는 모임(동까모)를 결성했으며 지금까지 북한 내 6개 지역에 지대(支隊)를 만들었다"고 발표

북한자유연합, 각국 중국 외교공관 앞 탈북자 송환 항의 시위(9.22)

- 미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전 솔티)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중국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미국, 영국, 호주, 일본, 한국 등 12개국의

19개 도시에서 일제히 개최

중국 공안, 중국 옌벤 조선족자치주에서 탈북자 단속 강화(9.23)

- 중국 공안은 옌벤(延邊) 조선족자치주 전역에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여, 9월 23일 하루에만도 2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전언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보호 탈북자 378명(9.19)

- 외교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7월 말 현재 북한을 탈출한 뒤 재외공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 수는 378명으로 집계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중국 공안 탈북자 35명 체포하여 북송 예정(9.30)

- 기독교계 북한인권단체인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는 홈페이지에 올린 '긴급성명서'에서 "9월 27일 중국 선양(瀋陽)에서 탈북민 20명, 웨이하이(威海)에서 10명, 옌지(延吉)에서 29일 3명, 30일 2명 등 모두 35명이 체포됐음을 확인했다"고 발표
 - 1999년 4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산하 '탈북난민보호 UN청원운동'이라는 특별기구로 출범한 CNKR는 2001년 5월 유엔에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전달하는 등 중국 내 탈북자 구명활동 전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채택(10.6)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중국의 탈북자 인권보장 및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할 것을 촉구

서울중앙지검, '독침테러' 기도 탈북자 간첩 구속 기소(10.6)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노려 테러를 시도한 혐의로 탈북자 출신인 안모씨를 구속 기소
 - 안씨는 남북경협사업을 위해 몽골 주재 북한 상사원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정찰총국 소속 공무원에 포섭된 것으로 밝혀짐.
 - 북한 정찰총국은 암살에 성공하면 특별수용소에 있는 안씨의 가족을 평양에 살

게 해주겠다고 회유

외교통상부, '위장망명' 탈북자 109명 한국 귀환(10.6)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홍정욱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난민 신청을 했던 한국국적 보유 탈북자가 한국 귀환에 필요한 여권을 발급받은 경우가 최근 5년간 109건인 것으로 집계
 - 발급 공관별로 보면 주 영국 대사관이 9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10건),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3건) 주 프랑스 대사관(3건) 등

전직 대사 123명, 탈북자 강제복송 중단 공동 성명(10.20)

- 최호중 전 부총리와 이정빈 전 외교부 장관 등 전직 대사 123명이 중국 정부에 탈북난민의 강제 복송을 중지하라고 촉구하는 성명 발표
 -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난민 해결 방안으로 유엔과 한국·중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의 정부 및 민간대표로 구성된 심사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

중국, 한국국적 탈북자 벌금형 가능(10.18)

- 중국 공안당국은 2012년 9월 선양에서 한국 국적 탈북자 2명을 포함해 탈북자 20여 명을 체포
 - 한국 국적 탈북자 2명 가운데 한 명은 지난 10일 풀려나 한국에 입국
 - 또 다른 한국 국적 탈북자인 A씨는 불법월경 방조죄와 불법월경 부당이득죄 등 혐의를 받고 있지만 벌금형을 받게 될 가능성

탈북자단체, 중국대사관 앞에서 강제송환 규탄(10.28)

- 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운동본부, 탈북자동지회 등 30여개 탈북자단체는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려는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 개최

자유아시아방송(RFA), 캐나다에서 탈북자단체 '탈북민협회' 결성(11.4)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캐나다에 정착한 탈북자 100여 명이 최근 '탈북민협회'를 결성했다고 보도

- ‘탈북민협회’는 오는 22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북한참상 증언과 사진전’을 열고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릴 계획
-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난민 보고서 2010’에 따르면 2007년 1명, 2008년 7명, 2009년 66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했고, 올 2월 초 탈북자 179명에 대한 난민 심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

미국의소리(VOA) 방송, 중국내 탈북고아 규모 보도(11.4)

-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국적없이 떠도는 탈북 고아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이 보고서는 “탈북 여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경우 이들이 중국 남성과 낳은 자녀의 상당수는 중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게 된다”며 “탈북 여성의 자녀는 중국 호구 취득이 거부되고 교육·의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

탈북자 21명, 서해상에서 5t급 목선타고 탈북(11.5)

- 북한 주민 21명이 지난달 30일 5t급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하다 해군 함정에 발견돼 인천을 통해 입국
 - 올해 들어 배를 타고 서해를 통해 귀순한 사례는 이번이 네 번째이며, 동해를 통한 귀순까지 합치면 해상 경로를 이용한 귀순 사례는 6차례로 집계

중국, 탈북자 19명 이달 하순 한국행(11.12)

- 2012년 9월 선양(瀋陽)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한에 강제송환될 위기에 놓였던 탈북자 19명이 이르면 이달 하순 우리나라로 들어올 것으로 알려짐.
 - 탈북자 19명 중 1명은 현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한국국적 탈북자로 중국정부는 이 사람을 제외한 탈북자 18명을 우선적으로 한국으로 보낼 예정
 - 한국국적 탈북자 1명은 추후 보석 등의 형식으로 풀려나 귀국할 것으로 전해짐.
 -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본인 희망에 따라 단체로 한국으로 보내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라는 게 외교가 평가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탈북자 23명 중국서 복송 위기(11.10)

-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는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서 체포된 5명,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 부근에서 체포된 어린이 3명,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11명, 윈난(雲南)성 쿤밍(昆明)에서 4명 등 총 23명의 탈북자가 복송 직전에 있다”고 긴급성명서를 발표함.
 - 이 단체는 “정부는 이들의 생명 보호를 위해 중국 공안당국에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국내 입국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함.

북한 당국, 김정은 등장 후 탈북자 단속 강화(11.10)

-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북한의 2인자로 위상을 다져가면서 국경 경비대의 탈북자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짐.
 - 데일리NK는 지난 4월 김정은이 등장한 후 탈북자 가족에 대한 박해가 한층 심해지고 있다며,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조국을 배신한 변절자들의 가족과 혁명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음.
 - 대북매체인 자유북한방송은 지난 8월 양강도 소식통을 인용해 인민무력부 산하의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헤산시의 국경초소에 새로 배치했다고 보도
 -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회장은 지난 10월 25일 한 탈북자가 양강도 헤산 부근에서 압록강을 건너 중국측 도로에 올라섰다가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
 - 북한은 국경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을 적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CCTV와 철조망 설치 작업도 꾸준히 벌이고 있음.
 - 북한 당국은 지난해부터 해상탈출을 막기 위해 해안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선박의 바다 출입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자유아시아방송(RFA), 일본민간단체 탈북자에 일본어 교육(11.15)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일본 민간단체인 ‘북조선 난민 구원기금’이 일본 내 탈북자 20여 명에게 하루 2시간씩 일본어 교육을 시작했다고 보도
 - 일본에 정착한 탈북자는 200여 명

국제의원연맹, 유엔에 탈북자 조사단 중국 파견 촉구(11.14)

-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은 미 의회에서 제8차 총회

를 개최한 후 제3국이 탈북자를 불법입국 혐의로 처벌하지 말고 한국으로 안전하게 송환하고, 유엔이 중국내 탈북자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조정관을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 채택

- ICPNKR에는 한국·미국·일본·몽골·태국·말레이시아 등 30여개국 의원들이 참여

국가정보원, 탈북자 위장 북한 간첩 구속(11.20)

- 국가정보원은 최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 혐의로 위장 간첩 김모씨 구속
 - 김씨는 중국·라오스·베트남·태국 등을 거쳐 지난 4월 한국에 들어옴.
 - 김씨는 탈북자를 상대로 한 정부합동심문에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으로 남한 침투 훈련을 받은 위장 간첩으로 판명

류우익 통일원장관, 중국측에 탈북자의 한국 입국을 위한 협조 당부(11.23)

- 중국을 방문 중인 류우익 통일장관은 탕자쉬안(唐家璇) 전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등을 만나 중국 내 탈북자의 한국 입국을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탈북자 대북송금 규모 추산(12.11)

- 탈북자 지원단체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새조위)은 지난해 탈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 분석을 통해 국내 탈북자들의 대북송금 규모를 120억여 원으로 추산
 - 30대 이상 탈북자 중 70% 정도가 1인당 1년에 평균 150만 원을 북한에 송금하는 것으로 조사
 - 이를 근거로 전체 30대 이상 탈북자 11,000여 명 중 8,000여 명이 매년 송금하는 것으로 계산해 연간 120여억 원으로 추정

자유아시아방송(RFA), 북한보위부 탈북자 가족 갈취 성행(12.9)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탈북자 가족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도

미국의소리(VOA) 방송, 영국 탈북자 망명기준 강화(12.14)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영국 내무부 산하 국경청이 최근 북한인의 망명을 심사하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보도

데일리NK, 무장 북한군 탈북 보도(12.14)

-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북·중 국경지역의 무장 군인들이 압록강을 통해 탈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
 - 단둥지역 변방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지난달 20일께 환톈(寬甸) 자치현으로 무장한 북한 군인 8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자정쯤 강을 건너던 이들 가운데 2명은 북한군에 사살됐고, 나머지 6명은 달아났다”고 언급

탈북자들, 주영 북한대사관 진입 시도(12.20)

- 재영 조선인연합회 김주일 사무총장 등 탈북자 4명은 주영 북한대사관 현관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상화와 사망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붙이고 건물 진입을 시도

2. 납북자

정부, 6.25 전쟁 납북자 55명 첫 공식 인정(8.2)

- 정부는 김항식 국무총리 주재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55명에 대해 6.25 전쟁 중 민간인 납북자로 공식 인정
 - 정부는 지난 1월3일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6.25 전쟁 중 납북 피해 신고를 접수 받아 각 시도 실무위원회의 사실조사 등을 거쳐 55명을 납북자로 최종 결정
 - 개인별 보상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기념관 건립과 추모사업 지원은 물론, 이들의 생사 확인과 유해 송환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

일본 총리,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전력(9.11)

-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 북한에 의한 납치 피해자 가족 연례회 대표와 요코타 사키에(横田早紀江)씨 등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
 - 이즈카씨는 1978년 북한으로 건너가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이은혜(일본명 다구치 야에코<田口八重子>)씨의 오빠
 - 요코타 사키에씨는 1977년 11월15일 니가타(新潟)시에서 실종된 요코다 메구미의 모친
 - 북한은 요코다 메구미가 죽었다면서 2004년 메구미의 유골을 일본에 있는 가족에게 돌려보냈지만 가짜유골이라는 주장이 지속 제기

의성군 재향군인회, 경북 의성서 오길남 박사 가족 구명운동 전개(10.1)

- 오길남 박사가 북에 남겨 둔 가족을 구하자는 운동이 오 박사의 고향인 경북 의성에서 전개
 - 오길남씨와 부인 신숙자씨 부부는 1985년 독일에 거주하다가 작곡가 윤이상의 권유와 북한 요원의 공작으로 두 딸 해원·규원씨와 함께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남편 오씨만 1986년 북한을 탈출
 - 신숙자씨의 고향인 경남 통영 시민들은 ‘통영의 딸 신숙자 모녀 구출운동’에 나서 국내외의 관심 고조

박선영 의원, ‘메구미 생존’ 탈북자 증언 확보(10.9)

-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국군포로의 아들로서 북한 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탈북자 이영수(46.가명)씨로부터 일본인 납북 피해자인 요코다 메구미가 생존해 있다는 증언 녹취를 확보했다고 발표
 - 탈북자 이영수씨는 2004년 초 북한 대동강변 지하식당에서 일본인 납치를 담당했던 북한 노동중앙당의 일본 담당자 아들이자 본인도 일본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개
 - 이씨는 “1997년 중학생 신분으로 납치된 메구미가 살아있고, 북한이 유골도 가져다 보냈다”며 “메구미가 간첩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몰라야할 것을 너무 많이 알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었다”고 증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워싱턴에서 세미나 개최(10.6)

-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회장 이미일)는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한국전쟁 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

일본 정부, 요코다 메구미 생존설 조사(10.22)

- 일본 정부가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제기한 일본 납북 피해자 요코다(横田) 메구미 생존설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
 - 일본 정부 납치대책문제대책본부는 조만간 한국에 직원을 보내 요코다 메구미씨가 2004년 말에서 2005년 초까지 생존해 있었다고 증언한 탈북자를 만날 계획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납북자 잊지 말아요” 물망초 배지 캠페인 (10.25~26)

-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25일부터 30일까지 광화문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납북 또는 억류된 국민 10만 명을 기억하기 위한 ‘물망초 배지 달기 범국민대회’ 진행

한국·일본 의원, ‘신숙자-메구미 송환’ 한일의원연대 가동(11.8)

- 한·일 양국 의원들은 북한에 억류된 ‘통영의 딸’ 신숙자씨 모녀와 일본인 납북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씨를 송환하기 위한 한일의원연대를 구성기로 하고 첫번째 준비모임 개최
 - 이날 모임은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민주당 신낙균 의원과 일본 민주당 가자마 나오키, 아리타 요시후 참의원이 참석

정부, 납북피해신청 264건 중 217건을 납북사건으로 인정(12.13)

-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김항식 국무총리)는 제4차 전체회의를 열어 각 시·도 실무위원회 사실조사와 소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납북피해신청 264건 중 217건을 납북사건으로 인정
 - 정부는 지난 8월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55명을 처음으로 6.25 전쟁 중 민간인 납북자로 인정하는 등 지금까지 총 272명을 납북피해자로 공식 인정

3. 국군포로

김관진 국방장관,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과 국군포로 가족 송환 의견 교환(7.14)

- 중국을 방문 중인 김관진 국방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을 예방하고 최근 탈북해 중국에 거주 중인 국군포로 가족 5명의 조기송환 문제 등에 대해 의견 교환

미국 하원, ‘한국전쟁 포로·납북자 문제해결’ 결의안 발의(7.27)

- 한국전쟁 정전 58주년 기념일인 27일(현지시간) 한국전 포로 및 실종자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북한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
 -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하원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북한이 생존 전쟁포로와 민간인 납북자들을 송환해줄 것을 촉구
 - 미국 정부가 지난 2005년 이후 중단된 북한내 미군유해 발굴작업을 재개할 것도 촉구

미국 하원, ‘한국전쟁 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결의안 채택(12.14)

-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간) ‘6.25전쟁 포로 및 실종자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4. 이산가족

서울중앙지법, 북한주민 상속 소송 “유산일부 지급” 판결(7.12)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북한 주민 윤모씨 등 4명이 남한에서 부친과 결혼한 권모씨와 이복형제·자매 등을 상대로 부친의 100억 원대 유산을 나눠달라고 낸 소송에서 “부동산 일부를 윤씨 등의 소유로 하고 일부 금원을 권씨 등이 윤씨 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쟁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양 당사자 사이에 성립했다고 발표

- 윤씨의 아버지는 6.25가 발발하자 만딸만 데리고 월남했으며 재혼해서 자녀를 4명 낳고 살다가 1987년 사망
- 윤씨의 큰누나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 윤씨 등의 모발 샘플, 영상자료, 소송위 입장 등을 전달받고 이를 토대로 2009년 2월 윤씨 명의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청구 소송 제기

대한적십자사, 미국과 북한 적십자사 이산가족 서한교환 합의(8.6)

- 2011년 5월 북한과 미국 간에 재미 이산가족 10가족의 서한을 시범적으로 교환하자는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짐.
 -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미국 적십자사와 유엔주재 북한 외무성 관계자가 접촉해 이산가족 서한 교환을 추진하고 이후에 상봉을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밝힘.

미국, 이산가족에서 유해발굴까지 대북접촉 확대(8.8)

- 미 국무부는 북한과 미국 간 이산가족 서신 시범교환 사업과 관련해 양국의 적십자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브리핑
 -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담당국은 지난 2일 유해발굴 사업 재개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서한을 북한 당국에 보냈다고 발표
 - 미국은 1996년부터 10년 간 북한에서 33차례의 미군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220여구의 유해를 발굴했지만 2005년 발굴 작업 중단

북한 외무성, 북·미 이산상봉 긍정 검토(8.11)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의 상봉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 표명
 - 북한은 재미 이산가족의 상봉을 허용하고 미국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계개선 가능성

통일부, 민간차원 남북이산가족 교류 감소 추세(8.14)

- 통일부에 따르면 2007년 542건에 이르던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는 2008년 314건, 2009년 119건, 2010년 38건, 올해 상반기 8건 등으로 급감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등의 형태로 중국을 비롯

한 제3국에서 성사

-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의 감소는 이산가족의 고령화 및 사망이 주요 원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추석 이산가족 상봉' 촉구(8.26)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추석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

구상찬 의원, 이산가족 신청인 사망자 지속 증가(9.10)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구상찬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4~2010년 이산가족 상봉 신청인 중 사망자가 연평균 3,785명으로 집계
 - 이산가족 생존자 중 80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04년 22.7%였으나 2011년 7월 현재 43.6%로 증가해 이산가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

통일부, 이산가족 상봉 중단 1년 경과(10.3)

- 이산가족상봉은 2000년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2008년 7월 북한군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사망 사건으로 전면 중단됐음.
 - 2010년 10월 1년3개월 만에 재개됐지만 1개월 뒤 터진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또다시 전면 중단되었음.

미국의소리(VOA) 방송, 미국 적십자사 북한에 이산가족 서한 전달(11.23)

- 미국 적십자사가 북한 적십자사에 미국내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하고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전달하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함.

대한적십자사, 제네바에서 '연내 이산상봉' 모색(11.30)

- 대한적십자사는 유중근 총재가 지난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적십자사 연맹(IFRC) 총회에서 백용호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연내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논의할 것을 제안

통일부, 80대 이산가족 비율 발표(12.15)

- 통일부는 지난 4~11월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
 - 정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생존자 8만 1천 800여 명 가운데 실제 연락이 닿은 6만 6천 611명을 대상으로 실시
 - 조사결과 90대 이상이 6%, 80대 37.8%, 70대 37.3%, 60대 13.6%, 50대 이하가 5.3% 순

5. 분석 및 평가

탈북방지를 위한 북한당국의 경계 태세 강화

-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북한의 2인자로 위상을 다져가면서 국경 경비대의 탈북자 단속 대폭 강화
 - 인민무력부 산하의 특수부대인 '폭풍군단'을 국경초소에 새로 배치
 - 탈북자를 현장에서 사살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주민에 대한 처벌 강화
 - 해안경비도 대폭 강화하고, 선박의 바다 출입도 엄격히 통제

국내 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통한 불안 조성

- 국정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에 대한 테러를 기도한 혐의로 탈북자 출신 안모씨를 구속 기소
 -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통일교육원장에 대한 테러를 시도하려는 정황도 포착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운동의 세계적 확산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 채택하고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보호할 것을 촉구
 - 북한민주화위원회 등 탈북자단체는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려는 중국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 전개
 - 미국 내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중

- 국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를 세계 각국에서 개최
- '국제의원연맹'은 유엔이 중국내 탈북자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조정관을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6.25전쟁 남북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과 국제적 관심의 확산

-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6.25전쟁남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회)는 총 272명을 남북피해자로 공식 인정
- 미국 하원은 12월 13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이후 북한에 납치·억류된 전쟁포로와 실종자, 민간인 납북자의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북미 간 이산가족 교류에 대한 합의 도출

- 미국 적십자사는 북한 적십자사와 재미 이산가족 가족의 서한 교환을 추진하고 상봉을 논의하기로 합의

민간차원 남북이산가족 교류 감소 추세와 당국 차원 교류 중단 지속

- 통일부에 따르면 2007년 542건에 이르던 민간차원 이산가족 교류는 2008년 314건, 2009년 119건, 2010년 38건, 올해 상반기 8건 등으로 급감
-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이산가족상봉 전면 중단 상태 지속

United Nations

A/C.3/66/L.54



General Assembly

Distr.: Limited
28 October 2011

Original: English

Sixty-sixth session

Third Committee

Agenda item 69 (c)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situations and reports of special rapporteurs and representatives**

Albania, Andorra, Australia, Austria, Belgium, Bosnia and Herzegovina, Bulgaria, Canada, Croatia, Cyprus, Czech Republic, Denmark, Estonia, Finland, France, Germany, Greece, Hungary, Iceland, Ireland, Israel, Italy, Japan, Latv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 Malta, Micronesia (Federated States of), Monaco, Montenegro, Netherlands, New Zealand, Norway, Poland, Portugal,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Moldova, Romania, Slovak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urkey,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United States of America: draft resolution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at State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have an obligation to promote and protect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to fulfil the obligations that they have undertaken under the vari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Mindful tha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¹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¹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² and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³

Acknowledging the particip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process, expressing serious concern at the refusal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articulate its position as to which recommendations included in the outcome report of its

¹ See resolution 2200 A (XXI), annex.

²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577, No. 27531.

³ *Ibid.*, vol. 1249, No. 20378.

A/C.3/66/L.54

universal periodic review⁴ in March 2010 enjoy its support, and regretting the continuing lack of action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report,

Recalling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treaty-monitoring bodies under the four treaties to which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Noting with appreciation the collaboration establishe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situation in the country, and the collaboration established with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for children,

Noting the decision on the resumption, on a modest scale, of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encouraging the engagement of the Government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ensure that the programmes benefit the persons in need of assistance,

Noting the cooperation establishe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World Food Programme,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a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in the country, as well as the letter of understanding signed with the World Food Programme, and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providing further access to all United Nations entities,

Recalling its resolutions 60/173 of 16 December 2005, 61/174 of 19 December 2006, 62/167 of 18 December 2007, 63/190 of 18 December 2008, 64/175 of 18 December 2009 and 65/225 of 21 December 2010,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s 2003/10 of 16 April 2003,⁵ 2004/13 of 15 April 2004⁶ and 2005/11 of 14 April 2005,⁷ Human Rights Council decision 1/102 of 30 June 2006⁸ and Council resolutions 7/15 of 27 March 2008,⁹ 10/16 of 26 March 2009,¹⁰ 13/14 of 25 March 2010¹¹ and 16/8 of 24 March 2011,¹² and mindful of the nee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engthen its coordinated efforts aimed at achieving the implementation of those resolutions,

Taking note of the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¹³ regretting that he still has not been allowed to visit the country and that he received no cooperation from the authoritie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aking note also of the comprehensive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⁴ A/HRC/13/13.

⁵ See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03, Supplement No. 3 (E/2003/23)*, chap. II, sect. A.

⁶ *Ibid.*, 2004, *Supplement No. 3 (E/2004/23)*, chap. II, sect. A.

⁷ *Ibid.*, 2005, *Supplement No. 3* and corrigenda (E/2005/23 and Corr.1 and 2), chap. II, sect. A.

⁸ See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Sixty-first Session, Supplement No. 53 (A/61/53)*, chap. II, sect. B.

⁹ *Ibid.*, *Sixty-third Session, Supplement No. 53 (A/63/53)*, chap. II.

¹⁰ *Ibid.*, *Sixty-fourth Session, Supplement No. 53 (A/64/53)*, chap. II, sect. A.

¹¹ *Ibid.*, *Sixty-fifth Session, Supplement No. 53* and corrigendum (A/65/53 and Corr.1), chap. II, sect. A.

¹² *Ibid.*, *Sixty-sixth Session, Supplement No. 53 (A/66/53)*, chap. II, sect. A.

¹³ See A/66/322.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resolution 65/225,¹⁴

Not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r-Korean dialogue, which coul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country,

Noting with regret that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across the border, which is an urgent humanitarian concern of the entire Korean people, has been halted, and hoping that it will be resumed as early as possible and that necessary arrangements for further reunions on a larger scale and a regular basis will be made betwee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Korea,

1. *Expresses its very serious concern* at:

(a) The persistence of continuing reports of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cluding:

(i)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including inhuman conditions of detention, public executions, extrajudicial and arbitrary detention; the absence of due process and the rule of law, including fair trial guarantees and an independent judiciary; the imposition of the death penalty for political and religious reasons; collective punishments; and the existence of a large number of prison camps and the extensive use of forced labour;

(ii) Limitations imposed on every person who wishes to move freely within the country and travel abroad, including the punishment of those who leave or try to leave the country without permission, or their families, as well as punishment of persons who are returned;

(iii) The situation of refugees and asylum-seekers expelled or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sanctions imposed on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have been repatriated from abroad, leading to punishments of internment, torture,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the death penalty, and in this regard strongly urges all States to respect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non-refoulement, to treat those who seek refuge humanely and to ensure unhindered access to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his Office, with a view to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those who seek refuge, and once again urges States parties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¹⁵ and the 1967 Protocol thereto¹⁶ in relation to refugees from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ho are covered by those instruments;

(iv) All-pervasive and severe restrictions on the freedoms of thought, conscience, religion,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right to privacy and equal access to information, by such means as the persecution of individuals exercising their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and their families, and th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 the conduct of public affairs, directly or through freely chosen representatives, of his or her country;

¹⁴ A/66/343.

¹⁵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89, No. 2545.

¹⁶ *Ibid.*, vol. 606, No. 8791.

A/C.3/66/L.54

(v) The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which have led to severe malnutrition, widespread health problems and other hardship for the popul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particular for persons belonging to particularly exposed groups, inter alia,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vi) Continuing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women, in particular the trafficking of women for the purpose of prostitution or forced marriage and the subjection of women to human smuggling, forced abortions, gender-based discrimination, including in the economic sphere, and gender-based violence and continuing impunity for such violence;

(vii) Continuing reports of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children, in particular the continued lack of access to basic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for many children, and in this regard notes the particularly vulnerable situation faced by, inter alia, returned or repatriated children, street children, children with disabilities, children whose parents are detained, children living in detention or in institutions and children in conflict with the law;

(viii) Continuing reports of violations of the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especially the use of collective camps and of coercive measures that targe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decide freely and responsibly on the number and spacing of their children;

(ix) Violations of workers'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the right to strike as defined by the obliga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¹ and the prohibition of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of any harmful or hazardous work of children as defined by the obligatio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de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²

(b) The continued refusal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cognize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or to extend cooperation to him, despite the renewal of the mandate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its resolutions 7/15,⁹ 10/16,¹⁰ 13/14¹¹ and 16/8;¹²

(c) The continued refusal of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articulate which recommendations enjoyed its support following its universal periodic review by the Human Rights Council or to express its commitment to their implementation, and regrets the lack of actions taken to date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contained in the final outcome;⁴

2. *Reiterates its very serious concern* at unresolved questions of international concern relating to abductions in the form of enforced disappearance, which violates the human rights of nationals of other sovereign countries, and in this regard strongly calls upon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rgently to resolve these questions, including through existing channels, in a transparent manner, including by ensuring the immediate return of abductees;

3. *Expresses its very deep concern* at the precarious humanitarian situation, including a serious deterioration in the availability of and access to food, in the

country, partly as a result of frequent natural disasters, compounded by structural weaknesses in agricultural production resulting in significant shortages of food, and the increasing State restrictions on the cultivation and trade in foodstuffs, as well as the prevalence of chronic and acute malnutrition, particularly among the most vulnerable groups, pregnant women, infants and the elderly, which, despite some progress, continues to affect the physical and mental development of a significant proportion of children, and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this regard, to take preventive and remedial action, cooperating where necessary with international donor agencies and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monitoring humanitarian assistance;

4. *Commends* the Special Rapporteur for the activities undertaken so far and for his continued efforts in the conduct of his mandate despite the limited access to information;

5.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respect fully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and, in this regard:

(a) To immediately put an end to the systematic, widespread and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mentioned above, inter alia, by implementing fully the measures set out in the above-mentioned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recommendations address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the context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and the United Nations special procedures and treaty bodies;

(b) To protect its inhabitants, address the issue of impunity and ensure that those responsible for violations of human rights are brought to justice before an independent judiciary;

(c) To tackle the root causes leading to refugee outflows and prosecute those who exploit refugees by human smuggling, trafficking and extortion, while not criminalizing the victims, and to ensure that citizen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expelled or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able to return in safety and dignity, are humanely treated and are not subjected to any kind of punishment;

(d) To extend its full cooperation to the Special Rapporteur, including by granting him full, free and unimpeded access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to othe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mechanisms so that a full needs assessment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may be made;

(e) To engage in technical cooperation activities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with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her Office, as pursued by the High Commissioner in recent year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country, and strive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made i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by the Human Rights Council;

(f) To engage in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with a view to significantly improving workers' rights;

(g) To continue and reinforce its cooperation with United Nations humanitarian agencies;

A/C.3/66/L.54

(h) To ensure full, safe and unhindered access to humanitarian aid and take measures to allow humanitarian agencies to secure its impartial delivery to all parts of the country on the basis of need in accordance with humanitarian principles, as it pledged to do, and to ensure access to adequate food and implement more effective food security policies, including through sustainable agriculture, sound food production and distribution measures and by allocating more funds to the food sector, and to ensure adequate monitoring of humanitarian assistance;

(i) To improv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Nations country team and development agencies so that they can directly contribute to improving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civilian population, including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monitoring and evaluation procedures;

(j) To consider ratifying and acceding to remain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which would enable a dialogue with the human rights treaty bodies;

6. *Decides* to continue its examination of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its sixty-seventh session, and to this end requests the Secretary-General to submit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requests the Special Rapporteur to continue to report hi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제66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¹⁾

(전 문)

총회는,

유엔회원국들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국제 협약상 지게 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아동권리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라는 점에 유의하며,

북한이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한 점을 인지하며, 북한이 2010.3월에 발표된 정례인권검토 결과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 중 어느 권고사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북한이 당사국인 4개 협약에 대한 이행감시기구의 최종견해를 상기하고,

북한의 보건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세계보건기구(WHO)와의 협력, 아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정부와 유엔아동기금과의 협력을 평가하며,

유엔개발계획(UNDP)이 북한내 활동을 소규모로 재개하기로 한 결정을 주목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발계획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북한정부가 국제사회와 교류할 것을 권장하며,

북한정부와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식량농업기금(FAO)가 긴급식량안보상황평가 실시를 위해 협력한 점과 세계식량계획과의 양해각서 서명에 주목하며, 모든 유엔기구에 대한 추가접근허용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유엔총회 결의 60/173(2005.12.16), 61/174(2006.12.19), 62/167(2007.12.18), 63/190(2008.12.18), 64/175(2009.12.18), 65/225(2010.12.21), 인권위원회 결의 2003/10(2003.4.16), 2004/13(2004.4.15), 2005/11(2005.4.14) 및 인권이사회 결정 1/102(2006.6.30), 결의 7/15(2008.3.27), 10/16(2009.3.26), 13/14(2010.3.25), 16/8(2011.3.24)를 상기하고, 국제사회의 동 결의의 이행을 위한 조율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유의하며,

1) 출처: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주목하고, 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북한당국으로부터 협조를 받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유엔총회 결의 65/225에 따라 사무총장이 제출한 포괄적인 북한인권보고서도 주목하며,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남북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모든 한국인의 시급한 인도적 우려사항인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점을 우려하며, 향후 규모 확대 및 정례화를 위해 필요한 남북간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본 문)

1. 아래 사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 (a) 북한내 아래사항을 포함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침해가 끊임없이 보고되고 있는 점
 - i)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비인간적인 구금상태 포함), 공개처형, 불법적·자의적 구금; 공정한 재판보장 및 사법부의 독립 등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인한 사형 선고; 집단처벌(연좌제); 다수의 수용소 존재 및 광범위한 강제노동 사용
 - ii) 해외에서 송환된 사람들은 물론, 허가없이 출국하거나 출국을 시도하는 사람들 또는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고 해외로 여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제한
 - iii) 북한으로 추방되거나 송환된 난민과 망명자의 상황, 구금, 고문, 해외에서 송환된 북한주민에게 가해지는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 혹은 사형 등의 처벌에 이르는 제재
⇒ 이와 관련, 모든 국가가 강제송환금지의 기본원칙을 존중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을 인도적으로 대하고, 피난처를 구하는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유엔난민최고대표 및 동 사무소에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 또한, 탈북난민과 관련하여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선택의정서 당사국들에게 협약과 의정서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iv) 사상, 양심, 종교, 의견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생활권, 평등한 정보 접근권,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 등을 통해 국가의 공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에 대한 광범위하고 심각한 제한

- v) 북한주민,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의 취약계층의 심각한 영양실조, 광범위한 보건문제, 여타 고층을 초래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침해
 - vi) 여성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지속적인 침해, 특히 매춘 또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여성에 대한 밀입국, 강제낙태, 경제분야 등에서의 성차별, 성폭력과 이러한 폭력행위에 대한 불처벌
 - vii) 아동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침해, 특히 많은 아동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는 지속적인 보고
 - ⇒ 이와 관련, 북한으로 돌아오거나 송환된 아동, 거리의 아동, 장애아동, 부모가 구금되어 있는 아동, 구금시설내에 살고 있는 아동, 불법적 상황에 처한 아동 등이 겪는 특별히 취약한 상황을 주목한다.
 - viii) 장애인의 인권 및 기본적 인권 침해에 관한 지속적인 보고, 특히 자녀의 수와 터울에 대한 그들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위한 집단수용소와 강제조치 사용
 - ix)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 침해,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북한의 의무로 규정된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유해하거나 위험한 노동 금지 의무의 위반
- (b) 인권이사회 결의(7/15, 10/16, 13/14, 16/8)를 통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가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정부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를 인정하지 않고 동 특별보고관에 대한 협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점
- (c) 북한정부가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이후 수락한 권고사항을 명확히 밝히거나 권고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를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점
 - ⇒ 아울러, 지금까지 결과문서에 포함된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유감을 표명한다.
2. 다른 주권국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실종 형태의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반복하며, 이와 관련, 북한정부가 납치자의 즉각 송환 보장을 포함하여, 투명한 방법으로 기존 채널 등을 통해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3. 빈번한 자연재해, 심각한 식량부족을 가져온 농업생산의 구조적 취약, 농산물 재배 및 교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강화 등에 기인하는 위태로운 북한의 인도적 상황(식량상황의 심각한 악화 포함)과 만성적이고 심각한 영양실조, 특히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어린이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임신부, 유아, 노인 등 취약계

층의 영양실조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정부에 인도적 지원 모니터링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국제원조기구들과 협력하면서 예방 및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4.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제한된 정보 접근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을 위해 그간 활동해온 것과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
5. 북한정부에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 (a) 상기 총회, 인권위원회 및 인권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조치,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서 북한에 제기된 권고사항, 그리고 유엔특별절차 및 협약기구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상기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
 - (b) 주민들을 보호하고, 불처벌 문제를 다루며, 인권침해자들을 독립적인 재판부 앞에서 처벌할 것
 - (c) 난민유출을 초래하는 근본원인을 다루고, 밀입국, 인신매매, 강탈 등을 통해 난민을 착취하는 자들을 기소하며, 그 피해자들을 범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북한으로 추방되었거나 송환되는 북한주민들이 안전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귀환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대우받으며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
 - (d) 인권상황에 대한 충분한 수요 평가를 위해, 북한내 완전하고 자유롭고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허용하는 등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다른 유엔 인권메커니즘에 전적인 협력을 제공할 것
 - (e)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에서 제기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추진한 바와 같이,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목표로 유엔인권최고대표 및 그 사무소와의 인권분야 기술협력 활동에 참여할 것
 - (f) 노동자 권리의 의미있는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할 것
 - (g) 유엔 인도지원기구와 협력을 계속하고 강화할 것
 - (h) 인도적 지원에 대해 완전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접근을 보장하고, 약속한 대로 인도적 기구들이 인도적 원칙에 따른 수요를 고려하여 북한내 모든 지역에 공평한 분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식량분야에 대한 자원배분을 증대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건설한 식량생산과 분배정책 등을 도모함으로써 식량접근권을 확보하고 좀더 효과적인 식량안보정책을 이행하며, 인도적지원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보장할 것
 - (i) 북한 소재 유엔기구 및 개발기구가 국제 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와 부합하여 새천

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 촉진 등 민간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증진할 것

- (j) 인권협약기구와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도록, 남아있는 국제인권협약 비준, 가입을 검토할 것
6. 제67차 총회에서 북한인권상황 검토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사무총장은 북한상황에 대한 포괄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조사결과와 권고를 계속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제6권 2호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NORTH KOREA HUMAN RIGHTS